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정준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530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3월 31일

발 의 자: 정준호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성준, 김원태, 남창진,
민병주, 박강산, 박승진,
박칠성, 서상열, 송도호,
송재혁, 오금란, 유정인,
유정희, 윤기섭, 이영실,
이용균, 이원형, 임종국,
최기찬, 최재란, 홍국표
의원(21명)

1. 제안이유

-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질병을 조기에 관리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돌봄에 필요한 시책 수립, 경비 지원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25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동물보호법
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3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.

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 ① 시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1. 반려동물 진료비
2. 반려동물 위탁보호비
3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,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、② (생 략) ③ <u>시장 또는 구청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위해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④、⑤ (생 략) <u>〈신 설〉</u>	제25조(동물보호업무의 지원 등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 <u>〈삭 제〉</u> ③、④ (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) <u>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</u> ① <u>시장은 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적절한 보호와 치료 등 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</u> ② <u>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</u> 1. <u>반려동물 진료비</u> 2. <u>반려동물 위탁보호비</u> 3. <u>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</u>

정하는 사항

③ 제2항에 따른 경비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 등의 기관에만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고, 동물정보시스템에 등록된 해당 반려동물의 소유자이어야 한다.

⑤ 제2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⑥ 시장은 반려동물 돌봄 지원 사업과 제도에 대해 시민이 충분히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.

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5조의2(취약계층 반려동물 돌봄 지원)를 신설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관련부서(정원도시국 동물보호과)에서 예산을 기편성하여 추진 중 이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[참고] 2025년도 동물보호 관련 분야별 예산 내역

조항	사업명	예산액(천원)
제25조의2	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(붙임1)	647,400

※자료: 2025 서울시 예산서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 주병준
추계세제팀장 김중헌
추 계 분 석 관 김지혜
☎ 02-2180-7952
e-mail : kjh0123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[붙임 1] 2025년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지원 사업설명서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25. 1.~12. (연례반복)
- 사업대상 :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회적 약자
- 주요내용
 - 우리동네 동물병원을 지정하여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게 필수 의료(기초검진, 예방접종 등) 및 선택(기초검진 중 발견된 질병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) 동물의료 지원
 - 우리동네 펫위탁소를 지정하여 병원 입원, 명절, 휴가철 등 사회적 약자의 장기 외출 시 반려동물 위탁서비스를 지원
 - 경제적 부담으로 동물장례를 이용 못하는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기본장례서비스 지원
 -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동물매개치료 시범사업 추진
- 소요예산 : 647,400천원